

2026년 1월 기한의이익상실통지서 미도달 계약 명세

1. 개요

항상 비엔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인 대출 계약에 대해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아래 4. 계약에 해당하는 고객님의 여신(연대보증 포함)계약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 조건

계약종류	금융리스, 할부금융, 대출
최초 대출 금액	3천만원 미만
결제일자	1일

3. 공시 내용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026.02.06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할부금융, 대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금융리스)	자동차리스이용약관 제 21조 등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분할 납부 권리 상실 및 대출잔액 일시청구, 차량(바이크) 반납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	차량(바이크) 매각 후 채무조정 요청서 제출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거래의 정상화를 신청하여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아 원리금을 입금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이익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4. 미도달 계약 명세

계약번호	고객명	주소	1차 발송일자	2차 발송일자	결과
2102-001440-4-001	강*수	부산 동래구 미남로102번길 33 **** *	2026-01-19	2026-01-21	미배달
2106-011256-4-001	이*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72 2동 **** *	2026-01-19	2026-01-21	미배달
2203-001178-4-001	정*윤	서울 마포구 관우로 76 **** *	2026-01-19	2026-01-21	미배달
2304-002034-4-001	김*호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신호아파트 **** *	2026-01-19	2026-01-21	미배달
2307-016571-4-001	허*운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8길 35 (산척동, **** *)	2026-01-19	2026-01-21	미배달
2412-003434-4-001	정*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8 **** *	2026-01-19	2026-01-21	미배달